

2개 부위 이상의 장애 상태에 대한 종합장애등급표(제41조제1항 단서 관련)

장애등급(1) \ 장애등급(2)	10	9	8	7	6	5	4	3	2
10	9	8	7	6	5	4	4	3	2
9	8	7	6	5	5	4	3	3	2
8	7	6	6	5	4	4	3	3	2
7	6	5	5	4	4	3	3	2	2
6	5	5	4	4	4	3	3	2	1
5	4	4	4	3	3	3	3	2	1
4	4	3	3	3	3	3	2	2	1
3	3	3	3	2	2	2	2	1	1
2	2	2	2	2	1	1	1	1	1

※ 비교: 장애등급(1)에 해당하는 등급과 장애등급(2)에 해당하는 등급이 서로 만나는 난의 등급을 종합장애등급으로 한다(예: 장애등급이 제7급과 제8급에 해당하는 2개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표에 따라 종합장애등급이 제5급으로 된다). 다만,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 또는 제1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중 중(重)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장애급여 수급권자의 종합장애등급으로 한다.